

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J-41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8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·시행 및 규제 개선 등에 따라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안산시 장사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→ 사용신고로 개정
(안 제2조, 제5조, 제7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)
- 화장장려금 정의 제18조 → 제19조로 조항 변경 (안 제2조제8호)
-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거주기간 삭제
(안 제5조제1항10호)
- 부부장(단) 사용나이를 70세 → 70세(당해년 1월 1일 기준)로 완화
(안 제6조제2항)
- 사용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처리기간을 10년 → 5년 단축, 근거법 조항을 제28조 → 제20조로 변경 (안 제9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4 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10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
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설공원묘지 및 공설묘지의 정비계획에 의해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6조(공설장사시설의 면적제한 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합장분묘, 봉안시설의 부부단 또는 자연장지의 부부장을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의 나이가 70세이상이어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7조(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간 등) ① (생략)

② 합장·부부단·부부장·가족장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사용기간은 사용허가한 인원 중 마지막으로 매장·봉안·자연장한 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.

③ (생략)

④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자가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장한 유골의 사용허가 신청과 관외 봉안시설에서 사용 중인 유골의 사용허가 신청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9조(사용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처리) ① (생략)

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공설공원묘지 -----
----- 시장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할 -----.

제6조(공설장사시설의 면적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70세(당해년 1월 1일 기준) 이상이어야 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간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신고 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사용신고를 하여야 -----
----- 사용신고와 -----
----- 사용신고 -----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사용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반출을 하지 아니하거나, 연장신청 후 사용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, 해당 유골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처리하며 10년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한 후 산골할 수 있다.

제10조(사용료 및 관리비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

1.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경우 : 전액
2.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 중 반환하는 경우 : 별표 3(다만, 자연장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)

③ ~ ⑤ (생략)

제11조(유골안치 및 반환 등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봉안시설 사용허가 신청자로부터 유골반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2조(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준 등) ① ~

④ (생략)

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·매매·임대할 수 없다.

제13조(사용허가 취소)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.

② -----

----- 제20조
----- 5년간 -----
-----.

제10조(사용료 및 관리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사용신고를 한-----

2. 사용신고를 한-----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유골안치 및 반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사용신고자로부터-----

-----.

제12조(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준 등) ① ~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사용신고를 한 -----

-----.

제13조(사용신고 취소) ① -----

----- 사용신고를 한 -----
----- 사용신
고를 -----

1.·2. (생략)

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

4.·5. (생략)

②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30일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14조(개선 및 개장명령)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자에게 60일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시장은 제6조 및 제9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분묘 및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15조(사용료 및 관리비의 면제) ① (생략)

②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시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연장
신고를 하지 -----

4.·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사용신고를
한 -----
----- 사
용신고를 -----.

제14조(개선 및 개장명령) ① -----
----- 사용신고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사용신고-----.

제15조(사용료 및 관리비의 면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사용신고를 하는 -----

-----.

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8-411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9월 8일
제안자 : 문화복지위원장

수정이유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개정함에 있어 추가 자구 변경이 필요함

주요골자

- “의 신고를 하고”를 “에게 신고를 하고” 로 수정(안 제4조)
- 단서 조항 중 “사용허가를 신청할”을 “사용신고를 할”로 수정(안 제7조제4항)

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4조 중 ““허가를 받아” 를 “신고를 하고” 로 한다” 를 ““의 허가를 받
아” 를 “에게 신고를 하고” 로 한다” 로 한다.

안 제7조제4항 단서 중 “사용허가를 신청할” 을 “사용신고를 할” 로 한다.

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“ 화장장려금 ” 이란 제 18조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제 19조----- -----.</p>	<p>제2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7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8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4조(사용허가) 공설장사시설은 법 제2조에 따른 연고자(이하 “연고자”라 한다)가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4조(사용신고) ----- ----- ----- -----의 신고를 하고----- -----.</p>	<p>제4조(사용신고) ----- ----- ----- -----에게 신고를 하고----- -----.</p>
<p>제5조(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에 안치될 수 있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관외에서 개장한 유골로서 <u>사용허가를 신청한</u> 연고자(배우자 또는 직계자녀로 한정한다)가 그 신청 당시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</p>	<p>제5조(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--<u>사용신고를 한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제5조(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7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8. (개정안과 같음)</p>

을 두고 거주한 경우

9. 관외 봉안시설에서 사
용 중인 유골로서 사용
허가를 신청한 연고자
(배우자 또는 직계자녀
로 한정한다)가 그 신청
당시 시에 10년 이상 계
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
거주한 경우

<신 설>

10. (생 략)

② ~ ⑤ (생 략)

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
구하고 시장은 공설공원묘
지 및 공설묘지의 정비계
획에 의해 개장한 유골을
안치하는 경우에는 공설장
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
수 있다.

제6조(공설장사시설의 면적
제한 등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합장분
묘, 봉안시설의 부부단 또
는 자연장지의 부부장을

9. -----

사용신고를 한 -----

10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
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
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
에 해당하는 자(유가족
제외)가 사망 당시 안산
시에 주민등록을 두고
거주한 경우

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----- 공설공원묘지 -----

----- 시장에게 공설장사
시설의 사용신고를 할 --
--.

제6조(공설장사시설의 면적
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9. (개정안과 같음)

10. (개정안과 같음)

11. (개정안과 같음)

② ~ ⑤ (개정안과 같음)

⑥ (개정안과 같음)

제6조(공설장사시설의 면적
제한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

② (개정안과 같음)

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
신청일 현재 생존하고 있
는 배우자의 나이가 70세
이상이어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7조(공설장사시설의 설치
기간 등)

①~ ③ (생략)

④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
고자 하는 자는 사망자가
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
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
한다.

다만, 개장한 유골의 사용
허가 신청과 관외 봉안시
설에서 사용 중인 유골의
사용허가 신청 및 시장이
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
정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
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용
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.

----- 70세(당해
년 1월 1일 기준) 이상
이어야 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공설장사시설의 설치
기간 등)

①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 사용신고를 하여야 -
-----.

----- 사용
신고와 -----

사용신고 -----

----- 사용
허가를 신청할-----.

③·④ (개정안과 같음)

제7조(공설장사시설의 설치
기간 등)

①~ ③ (개정안과 같음)

④ -----

사용신고를 하여야 ----
-----.

----- 사용
신고와 -----

사용신고 -----

----- 사용
신고를 할-----.